

성차별

OFCCP는 귀하를 성차별로부터 보호합니다

연방 계약 준수 프로그램 사무소(Office of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s, OFCCP)는 개정된 행정명령 11246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 하청업체와 하도급 업자가 성별에 따라 직원과 구직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성에 따른 차별이란 무엇입니까?

이러한 고용 차별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귀하의 성별 때문에 직원이나 지원자로서 귀하를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로 대하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겉보기에는 공평한 고용주의 정책이나 절차가 성별 때문에 직원이나 구직자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이러한 차별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주가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거나

부가급부를 다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청업체는 귀하께 임금을 다르게 지불할 수 없을 뿐더러 다른 내용의 부가급부를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귀하의 성별 때문에 초과 근무, 훈련, 또는 더 높은 급여나 직책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가급부에는 의료, 병원, 사고, 생명 보험 및 퇴직 급부금, 이익 분배 및 보너스 계획, 휴가, 기타 고용 조건, 특권이 포함됩니다.

3. 하청업체들이 성 고정관념에 따라 직원들을 다르게 대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요. 하청업체들은 귀하께 여성이라면 혹은 남성이라면 어떻게 보여야 하고, 행동할지에 대해 또는 남성이나 여성이 어떤 종류의 일을 해야 하는지와 같은 성 고정관념에 따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귀하께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4. 양육자도 성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받습니까?

네. 하청업체는 돌봄 책임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귀하를 다르게 대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하청업체는 한 가정의 어머니인 자들에게 아버지들에게는 주어지는 고용기회를 제공할 것을 거부하거나 어머니라면 이용 가능한 유연한 근로 약정을 아버지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5. 고용주가 일자리와 개발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합니까?

네. 하청업체는 일자리와 개발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청업체는 해당 요건이 남성 또는 여성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할 수 없는 한 성별에 근거한 요건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청업체에서는 지원자의 성별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요건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단, 이것이 직무와 관련이 있고 필수적이라면 예외입니다. 하청업체들은 성별을 근거로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책으로 승진할 수 있는 훈련, 업무 과제 또는 기타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됩니다.

6. OFCCP는 하청업체에서 가해지는 성희롱으로부터 저를 보호해줄까요?

네. 성희롱은 성차별의 한 형태입니다. OFCCP는 반갑지 않은 성적인 접근, 성적인 호의의 요청, 한 사람의 성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그리고 성에 근거한 원치 않는 언어적 또는 육체적 행위로부터 귀하를 보호합니다. 고용 기간 또는 조건으로 작성되었을 때, 혹은 그러한 행동에 복종하거나 거절했을 때, 이것이 고용 결정의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 혹은 그러한 행위가 불합리하게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때, 이러한 행동은 금지됩니다.

7. OFCCP는 임신부와 새로이 임마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연방 하청업체의 지원자와 근로자는 임신, 출산 또는 관련 의료 조건으로 인한 일자리, 임금 및 의료 보장 범위의 상실을 포함한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하청업체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임신, 출산 또는 관련된 의료 조건 때문에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 해당 업체들이 장애인이나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을 받은 직원들과 같은 다른 근로자들에게 비슷한 편의를 제공할 때 그렇습니다.



## 8. OFCCP에서 트랜스젠더 근로자들은 어떻게 보호합니까?

하청업체들은 성 정체성을 근거로 차별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청업체는 해당 직원과 지원자가 육실, 탈의실, 샤워실 및 동일한 성별기리만 사용해야하는 유사한 시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또한 하청업체가 제공하는 의료급여제도는 성 정체성 또는 트랜스젠더 상태에 기초하여, 의료보장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 9. OFCCP는 누구를 보호합니까?

OFCCP는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회사의 직원 및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여기에는 은행, 정보기술 회사, 육류 포장 공장, 소매점, 제조 공장, 회계 회사, 건설 회사 등의 직원이 포함됩니다.

## 10. 고용주가 제 성별 때문에 저를 차별했다고 믿는다면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업이나 입사지원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귀하께서는 OFCCP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 고용주가 연방 하도급 업자 또는 하도급 업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 11. OFCCP에 어떻게 불만을 제기합니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차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OFCCP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양식 작성 및 제출
- Completing a form in person at an OFCCP office; or
- 이러한 차별이 발생한 장소의 관할 OFCCP 지역 사무소로 작성된 양식을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냅니다.

이 양식은 <http://www.dol.gov/ofccp/regs/compliance/pdf/pdfstart.htm> 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모든 OFCCP 사무소에서 종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사무실을 찾으려면, <http://www.dol.gov/ofccp/contacts/ofnation2.htm>에 접속하여 OFCCP 사무실의 온라인 목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다 작성하고 나서는 꼭 서명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OFCCP는 귀하의 불만 사항을 접수하기는 하나 OFCCP 조사관이 추후 면담 과정에서 양식에 서명을 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인종·색깔·종교·성별·성향·성정체성·국적출신 등에 따른 차별을 주장하는 민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별이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임금에 대해 논의, 공개 또는 문의하는 것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불만에도 동일한 180일 기간이 적용됩니다.

## 12. 내가 불만을 제기했다는 것을 빌미로 고용주가 나를 해고하거나 좌천시키거나 적대적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요. 고용주가 직원이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참여한 것을 빌미로 이에 대해 보복 행위를 일삼는 것은 불법입니다. OFCCP는 규정을 통해 귀하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괴롭힘, 협박, 위협, 강요 또는 보복의 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귀하를 보호합니다.

## 13. OFCCP와 평등 고용 추진 위원회(EEOC)에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네. 만약 귀하께서 OFCCP와 EEOC에 모두 신고하게 될 경우, 귀하의 불만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OFCCP는 일반적으로 신청자 또는 직원의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기초하여 연방 하청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불만 사항을 보유하고 조사합니다. OFCCP는 또한 일반적으로 직원이나 지원자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이 있다고 판단할 시, 혹은 장애에 따른 차별, 보호받는 재향군인 지위, 임금에 대한 논의, 공개 또는 문의에 대하여 고의적인 차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된 불만을 보관합니다.

## 14. 만약 내가 고용 차별의 피해자였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차별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귀하께서 받아 마땅한 지위나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구제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고용, 승진, 복직 또는 업무의 재할당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밀린 급여, 초기 급여, 임금 인상 또는 이러한 구제책을 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OFCCP가 연방 하청업체 또는 하도급자가 차별을 가했다고 판단할 경우, OFCCP는 회사를 향후 연방 계약 대상이 되지 못하게끔 금하거나 제외시키거나 회사의 현재 계약이 취소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

미국 노동부 연방  
계약 준수 프로그램 사무소  
200 Constitution Avenue, NW  
Washington, D.C. 20210  
1-800-397-6251  
전화(TTY): 1-877-889-5627  
[www.dol.gov/ofccp](http://www.dol.gov/ofccp)

이 팩트 시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본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실제 법률 및 규정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